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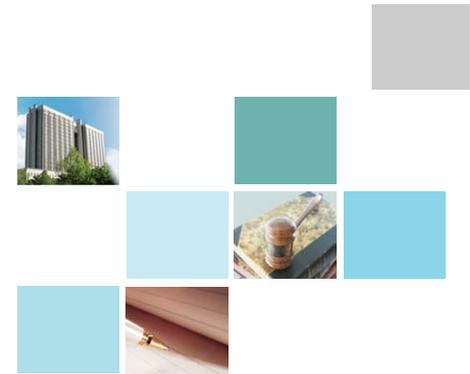
행정 항소심

안내서

행정 항소심 안내서



▶▶ slgodung.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안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위치한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가 1심 법원으로서 판결하거나 결정한 사건 등을 항소심 또는 항고심으로서 판단하는 법원이므로, 사건의 양이나 중요도 면에서 전국 법원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각종 분쟁과 갈등을 법정에서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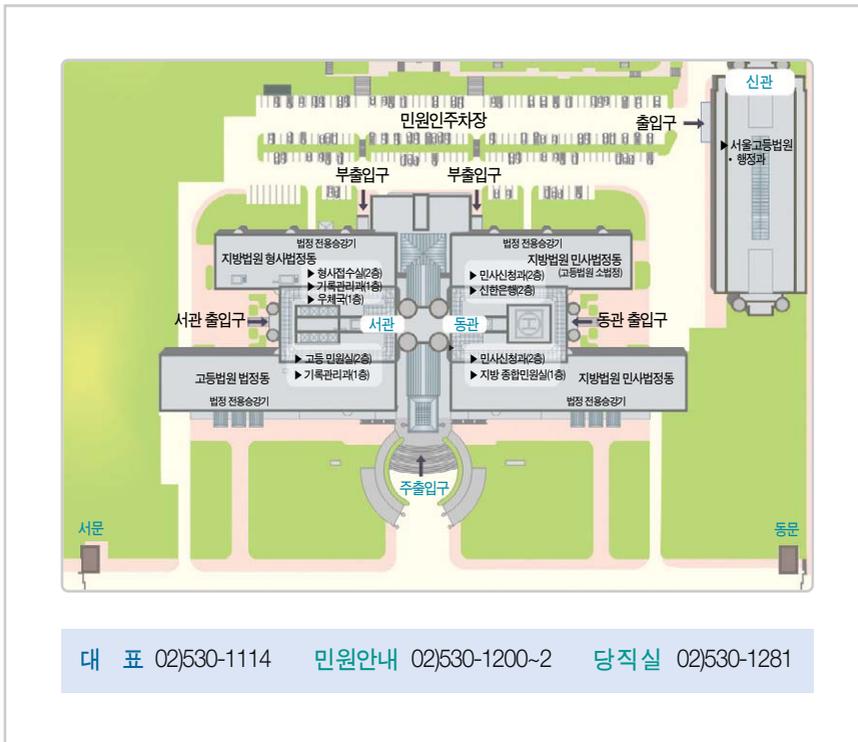
그런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절차를 잘 이해하고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한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민사, 형사, 행정의 분야별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항소심 재판의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 7.

서울고등법원장 김진권



행정소송이란

01

행정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담당자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생긴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가장 많은 소송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결정·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시장 또는 구청장, 근로복지공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의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건축허가거부처분 등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아니라 ○○시 또는 ○○구 자체가 상대방이 되고 중앙행정부처 소관인 경우 대한민국이 상대방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즉 공익에 관계된 사항을 재판하므로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02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행정청의 상급기관(통상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 관련된 소송이나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때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심판의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예컨대 부당해고구제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재결, 토지수용 사건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도 사실상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 그 소의 제기는 위법하여 각하됩니다.

03

행정소송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나요 (제소기간)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항고 소송 중 취소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 재결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개별 법령에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소기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04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나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

노래방이나 식당 등에 대하여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처분 등이 존재할 것
-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
-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⑤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집행정지의 효력과 본안소송의 항소

집행정지결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대부분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예는 드뭅니다.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를 제기한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연히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하여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결정의 효력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사라지게 되므로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통상 제1심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계속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원고가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이므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의 요건에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있어 1심에서 패소하였다면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번 판단을 받은 것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에는 인용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될 때까지는 여전히 행정처분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 원고가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주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05

항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가요

1심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항소법원에 제출한 경우(예컨대 1심 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었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장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항소장이 14일 이내에 접수되었는지는 항소심 법원이 아닌 1심 법원(위의 예에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출 법원이 맞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06

인지액, 송달료는 얼마나 내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납부

항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인 인지의 1.5배 상당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당사자 수 × 12 × 3,060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의 환급

항소장에 대하여 각하명령이 있거나(무변론 항소각하판결 제외) 항소를 한 사람이 변론종결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인지액의 1/2을 환급합니다. 다만,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따라서 인지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인지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인지 등의 환급청구서, 소송인지 등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영수필확인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환급받을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과 인지환급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의 잔액 환급

항소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송달료가 남아있으면 송달료 잔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송달료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송달료 취급은행이 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료 취급은행이 송달료 납부인에게 보낸 송달료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07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면, 여기에 적힌 제출기한 이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준비서면에는 1심 판결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는지 밝히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을 간결하게 적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이 신청할 증거와 그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적힌 항소이유는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충실하게 적어 내야 합니다. 준비서면 대신에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도 좋습니다.

08 반박 준비서면은 언제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상대방은 항소인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을 때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준비명령을 받게 되며, 준비명령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박 준비서면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1심 판결의 잘못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고,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항이나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자신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과 신청할 증거 및 증명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09 준비서면은 몇 부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준비서면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상대방 수에 맞는 부분을 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장 또는 답변서나 서증들을 복사하여 같이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기록의 부피만 늘어나게 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기일 출석

10 항소심의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항소심 법원에서는 항소장 제출 이후 신속히 재판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는 재판할 사건 수가 많고,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장과 첨부서류 및 증거가 심판하기에 적절할 정도에 미흡한 경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재판부 사정에 따라 재판날짜를 지정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판부마다 접수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재판날짜를 정하게 되며,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11 변론기일 출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당사자는 기일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지켜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시차제 소환을 하고 있으므로 지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2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가 가능한가요

당사자가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항소심은 합의부에서 심판하여야 하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3 변론 진행과 증거 제출

13 변론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변론기일에 해당 사건을 부르면 원고석 또는 피고석에 나오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 외에는 원고석 또는 피고석에 앉아 변론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가족 등)은 방청석에 앉아서 방청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법정에는 실물화상기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도면이나 사진 등을 직접 법정에 내놓는 방법으로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14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나요

필요한 서증은 가능한 한 첫 기일의 1주일 전에 준비서면과 함께 모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줄 서증의 복사본도 반드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각각의 서증에 대하여 서증번호, 서증명, 작성연월일, 작성자, 증명취지 등을 기재한 증거설명서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증의 양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증명취지를 밝히는 증거설명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문서(처분서, 납세고지서 등)와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은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증이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증거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증번호를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연장이므로 1심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서류(서증)의 경우 새로운 증거만 1심에서 제출한 서증번호(원고 : 갑 제0호증, 피고 : 을 제0호증)에 연속된 번호를 적은 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도 중복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법령, 시행규칙이나 참고가 되는 다른 사건의 판결례는 서증이 아닌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서증번호를 매기지 마시고, '참고자료' 라고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6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서증 중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의사의 진료기록 등)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적 등을 발췌 복사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책의 표지와 발행연도, 저자 등이 나타나는 부분도 함께 제출하고,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누가 작성한 자료인지가 나타나도록 출력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7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문서송부촉탁은 대부분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송부촉탁한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그 문서에서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를 개별적으로 가려내어 서증목록(서증번호와 서증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기록을 다시 복사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면 당해 서증이 이중으로 제출되어 기록관리 및 기록검토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8 증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증인의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 증명취지. 단 주소는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를 적어야 하고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신문사항과 증인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사항이란 증인의 경험을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단문장답식의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상대방 수에 5를 더한 숫자만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증인신문사항을 만들 때에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증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은 증인신문사항으로서 부적절하고, 재판장은 그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리 내야 하나, 증인이 여비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인여비를 예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 신체감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감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감정료)을 미리 내야 합니다. 만약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감정이 실시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시 병원에서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체감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병원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게 되며 당사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신체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를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되는데 감정서가 도착하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가 도착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신체감정서가 도착한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나 대리인은 해당 재판부에 가서 감정서 부분을 받거나 복사를 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0 사실조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촉탁 상대방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사할 내용이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촉탁을 하여야 하지 사실조회 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21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의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코너(<http://help.scourt.go.kr/nm/main>)의 양식모음란 또는 재판서식집을 참조하거나, 법원 접수 창구에 비치된 증거신청양식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기일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한 증인의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날짜에 재판진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판 날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일 직전에 반드시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와 상고

23 판결 선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24 상고기간은 얼마나 되고 상고장을 제출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항소심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25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인지는 얼마나 붙여야 하는가요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인지는 1심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금액의 2배(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1심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6 상고 당시 붙였던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되거나 심리불속행결정으로 기각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상고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와 조정권고

27 소송구조란 무엇인가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변호사 보수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항소 제기 시 1심 법원, 항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1심 또는 항소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8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자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29 외국인 사건의 소송구조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나요

외국인 사건 역시 소송구조의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재판비용 중 통역·번역료는 통역·번역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국고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대동한 통역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구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변호사와 상담 시 통역·번역인이 참석한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의 일부로서 상환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구조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의 전형적인 유형인 난민사건에 관하여 소송구조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 조정권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행정사건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경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하여 조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입장과 법률적 당부 및 승소가능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조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관한 답변, 조정권고에 따른 변경처분 등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피고 행정청이 먼저 서면으로 변경처분을 한 후에 원고가 소취하를 함으로써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

31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행정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인이 왜 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재판부와 상대방이 알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통상 재판부에서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제기한 후 가급적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 위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되어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32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변경된 경우에도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의 액수를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정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소취하를 한 경우

소취하를 한 경우, 소취하를 하게 된 사정(예컨대 원고 소장의 청구취지대로 행정청이 처분한 경우)에 따라 원고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전(前)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재판도 효력이 사라지므로 소송종료 당시까지 지출된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1심 법원이 아닌 소송종료 당시의 법원(따라서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고심, 상고심에서 항소취하 또는 상고취하를 한 경우

항소취하나 상고취하를 한 경우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1심 또는 항소심까지의 소송비용은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항소취하를 한 경우 항소심 소송비용은 고등법원에, 상고취하를 한 경우 상고심 소송비용은 대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33

재판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판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재판서류를 보낼 때에는 겹봉투에 법원명 외에도 재판부와 사건번호, 사건명을 표시하시면 해당 재판부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물을 발송한 때가 아니라 '우편물이 당해 법원에 도착한 때'를 기준으로 재판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기간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제출된 재판서류는 접수 시에 제출자가 작성명인인(그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표시된 사람)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편제출자가 작성명인인 본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준비서면이나 서증은 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법상 준비서면의 진술이나 증거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소취하와 항소취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소취하

- 소취하는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소취하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로 됩니다.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이미 선고된 1심이나 항소심 판결도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소취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1심에서 소취하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항소취하

- 항소취하는 처음부터 항소제기가 없던 것으로 되므로 1심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취하는 상대방이 응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양쪽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고(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봅니다)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이후 기일에 다시 1회 불출석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심의 경우에 소취하로 간주되는 것과 다릅니다).

35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36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7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건의 당사자 등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고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열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송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8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홈페이지가 있나요

재판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알고 싶으시면,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main/Main.work>)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main/Main.work>)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코너(<http://help.scourt.go.kr/nm/main>)의 양식모음란 또는 재판서식집에는 각종 증거신청양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